

2022년도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 신규지원(사전기획 단계) 대상과제 공고

산단 대개조 지역내 기업군 중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의 202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2. 사업추진체계	5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담조건	6
4. 기술료 징수	7
5. 신청자격 등	8
6. 평가절차 및 기준	10
7. 근거법령 및 규정	11
8. 사업신청	12
9. 제출서류	12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심의 ESG가치 기반 상생협력 모델 발굴·확산 및 공동혁신 기술개발 지원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영활동을 의미
 - *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지속가능발전법」 2020.5.26. 제정)
 - 본 사업은 ESG를 산업단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경제 실현전략으로 활용함으로써, 산단대개조 지역* 내 환경·안전·사회분야 현안의 공동혁신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 경북, 광주, 대구, 인천, 전남, 경기, 경남, 부산, 울산, 전북 지역 대상지역에 한함

구분	지역	대상지역	
		거점산단	연계산단·지역
'20년 지역	경북	구미(국)	김천1(일), 왜관(일), 성주(일)
	광주	광주첨단(국)	하남(일), 빛그린(국)
	대구	성서(일)	서대구(일), 대구제3(일), 혁신경제벨트
	인천	남동(국)	부평, 주안(국), 송도지식정보(일), 송도경자구역
	전남	여수(국)	광양(국), 울촌1(일), 광양항 항만부지
'21년 지역	경기	반월시화(국)	성남(일), 화성발안(일), 판교테크노밸리
	경남	창원(국)	사천(일), 함안칠서(일), 김해골든루트(일)
	부산	명지녹산(국)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일), 신평장림(일), 부산진해경자구역 지사지역
	울산	울산미포(국)	테크노(일), 매곡(일), 친환경자동차벨트
	전북	군산(국)	익산제2(일), 완주과학(일), 새만금(국)

1-2. 지원방법

- 1단계(사전기획) ⇒ 2단계(기술개발) / 경쟁기획을 통한 단계별 지원
 - 사전기획 통한 ESG형 공동혁신 기본전략 및 기술개발 기획 능력 제고 →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상용화)모델 구체화 통한 ESG형 공동혁신 성과제고를 위해 경쟁기획 방식으로 단계적 지원

구분	지원기간	지원 및 과제 수행내용
1단계 (사전기획)	3개월* * 2단계 지원대상 선정은 1단계 수행과제의 중간 평가를 통해 결정	■ ESG 기본전략 및 관리체계¹⁾(진단-실사-개선) 구축(필수) ■ 기술 및 융합서비스 개발계획 수립(필수) ■ 특허전략 및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적용계획 수립(필수) ■ 개발기술 실증계획 수립(해당시) ■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계획 수립(해당시) * 연구비는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연구활동비만 산정 가능
2단계 (기술개발)	2년 이내 (1차연도는 8개월 지원)	■ 2단계 선정된 컨소시엄에 한해 1단계 통해 기획한 ESG형 산단 공동혁신 전략의 고도화 및 기술개발 실증,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적용, 플랫폼 구축·시범운영 등을 지원

- 1) 환경개선, 안전관리, 공급망관리, 자원공동활용 등 ESG관련 대내외 환경 분석 및 핵심이슈 도출, 컨소시엄 구성원의 ESG수준진단 및 개선방향성 정립, 협력사 ESG 지원전략 계획수립, 세부 전략과제 선정 및 과제별 성과 목표 구체화, ESG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규제개선 및 재교육/전환교육 추진방안, 등

1-3. 지원대상과제

구분	주요내용						
2022년도 예산(안)	10.59억원						
지원규모 ¹⁾	구분	1단계(사전기획)			2단계(기술개발)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금액
	1차연도	'22.3월~5월'	3개월	39백만원	'22.5월~12월	8개월	942백만원
	2차연도	-	-	-	'23.1~12월	12개월	1,412백만원
	* 1단계 선정된 과제는 2단계 선정평가를 위한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5월중 제출해야 함						
지원과제	(1단계:사전기획) 3개 과제, (2단계:기술개발) 1개 과제						
공모유형	분야공모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산단 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사업자 * 기업부설연구소의 소재지는 제한하지 않음. 단, 산단 대개조 지역 내 기업부설연구소만 보유한 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수요기업 ²⁾ , 대학, 연구소, 협단체, 지역주민 협의체, 사업화 전문회사 ³⁾ 등						
필수 의무사항	■ 산단 대개조지역 내 기업군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 - 1단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산단 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개사, 대학 또는 연구소 중 1개, 사업화전문회사³⁾ 1개 - 2단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산단 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5개사, 수요기업 2개사 이상, 대학 또는 연구소 중 1개, 사업화전문회사³⁾ 1개 ■ 지원과제 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지역내 산단ESG거버넌스를 구성하고 ESG형 공동혁신 전략 수립·이행을 충실히 하여야 하며, 이 때 전문기관이 별도의 ESG거버넌스(각 기관 및 단체 등)를 구성할 경우 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함 (필요시 병합운영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ESG거버넌스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추천·변경 등)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함 ■ 2단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요기업 활약서를 필수로 제출하고, 2단계 선정 과제에 한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 확인제 등록 필수(www.benis.or.kr)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1단계 : 비징수, 2단계 :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필요시 출연금 없이 과제 참여 가능)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해 지정된 사업화 전문회사(총 39개사, 기술은행 홈페이지(<https://www.ntb.kr>)-NTB네트워크-사업화전문회사 항목에서 조회가능)

1-4. 지원분야

- 산단대개조 지역 기업군 중심 가치사슬(컨소시엄)의 ESG역량 개선에 기여가능한 아래 5개 분야 지원(5개 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하되, 연구개발계획 등은 5개 분야를 혼용하여 수립 가능, 예시 : 탄소배출 저감 및 생산공정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

순번	분야	내용
1	탄소/유해물질 배출 및 에너지 저감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환경 유해 물질 배출 저감·제거 기술 개발·실증
2	환경친화적 소재·부품·제품 개발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선박 등 소재·부품·제품 기술 개발·실증
3	생산공정/제품 안전관리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생산공정 및 제품 안전성 강화 위한 제조장비 자동화 등 고안전 기술 개발·실증
4	공급망관리 등 협업환경 개선	■ 산업단지 공급망내 기업간 자원 관리, 에너지 관리, 주문·생산, 유통·판매 등 협업과정에서 공동활용 가능한 플랫폼 개발·실증 ■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편입을 위한 주력수출산업 분야 공급망의 GVC현황 및 ESG현황분석을 통한 구매연계형 기술 개발·실증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 ESG지원 계획수립·이행 및 공급망 관리를 통한 구매연계형 공동기술 R&BD
5	폐기물저감 재활용, 자원공동활용 촉진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산업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자원공동활용 등 자원공유에 기여 가능한 솔루션 및 플랫폼 개발·실증

1-5. 지원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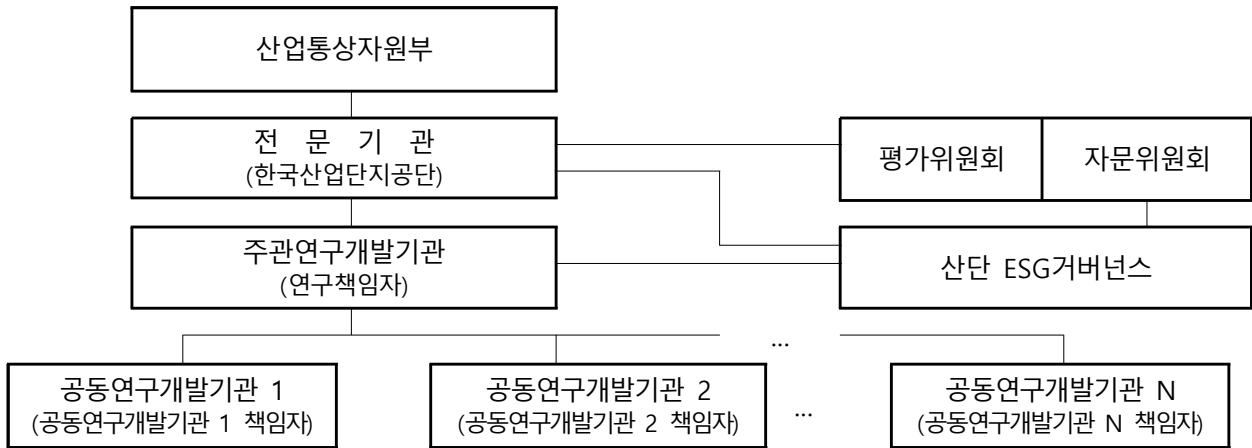
- 「1-4. 지원분야」에 적합한 아래의 지원 메뉴를 연차별 적정지원 규모 내에서 조합하여 신청

구분	지원메뉴	적정지원규모	
		1차연도	2차연도
비R&D	■ ESG형 공동혁신 전략수립	5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 거버넌스 구성 및 네트워크 활동		
	■ 제도/규제 개선 및 재교육/전환교육 지원 등		
R&D	■ 기술 및 융합서비스 개발	5억원 이내	5억원 이내
	■ 개발기술 실증지원 및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적용	3억원 이내	8억원 이내
	■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3억원 이내	4억원 이내

※ 2단계(기술개발) 선정평가 대상 컨소시엄에 한함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일정	추진절차	주체
'22.1월	사업공고 및 접수(수행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산업통상자원부
'22.2월	1단계 선정평가(발표)	KICOX(평가위원회)
'22.2월	1단계 지원대상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KICOX↔연구개발기관
'22.3~5월(3개월)	1단계 협약 및 과제 수행(사전기획)	연구개발기관
'22.5월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연구개발기관→KICOX
'22.5월	2단계 선정평가	KICOX(평가위원회)
'22.5월	2단계 지원대상 선정확정 및 협약	산업통상자원부 KICOX↔연구개발기관
'22.5~12월(8개월)	2단계 1차연도 과제 수행(기술개발 등)	연구개발기관
'22.10월	수행기관 등 산단ESG거버넌스 간담회	KICOX
'22.12월	진도점검	KICOX
'23.1~12월(12개월)	2단계 2차연도 과제 수행(기술개발 등)	연구개발기관
'23.12월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연구개발기관→KICOX (평가위원회)
'24~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KICOX↔연구개발기관

* 상기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담조건

3-1.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중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할 수 있음)

3-2.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2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연구개발기관 ¹⁾ 유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아닌기업 ²⁾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³⁾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 ⁴⁾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수요기업⁵⁾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75% 이하로 계상 가능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가능)

-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 및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임
-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 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2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아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4. 기술료 징수 (2단계 기술개발 과제에 해당)

4.1.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 납부 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징수 대상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4.2.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 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5. 신청자격 등

5-1. 신청자격

구분	필수 자격요건		선택 자격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단계	■ 산단 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사업자	■ 산단 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1개사 이상 ■ 대학 또는 연구소 중 1개 ■ 사업화 전문회사 1개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산단대개조 지역내 지역주민협의체
2단계	■ 1단계에서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변경 불가)	■ 산단 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4개사 이상 ■ 수요기업 2개사 이상 ■ 대학 또는 연구소 중 1개 ■ 사업화 전문회사 1개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산단 대개조 지역 내 기업부설 연구소만 보유한 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없음(입주기업확인서와 기업부설연구소 함께 보유해야 자격이 있음)

5-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신청)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신청)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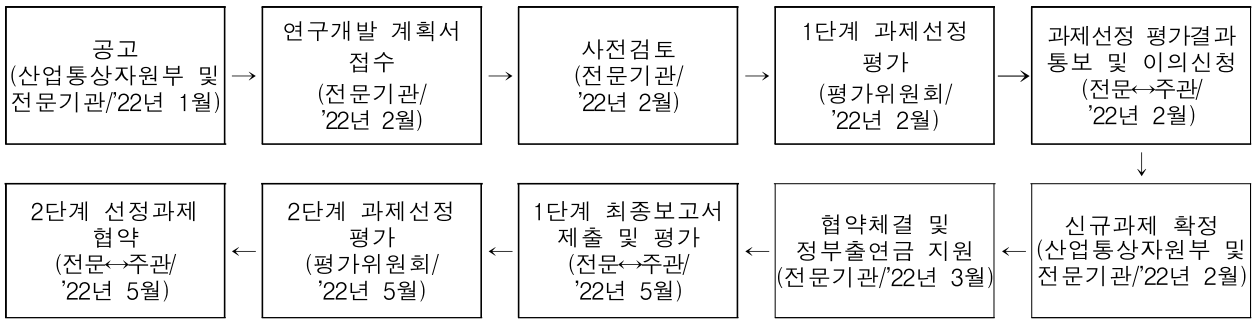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5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별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 연구직은 예외)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 및 연구소 업력,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R&D 집약도 등

6. 평가 절차 및 기준

6-1.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2단계 평가절차는 선정기관에 별도안내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1단계 평가 :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 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면 혹은 대면)을 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연구개발 계획서로만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 계획서 평가(본평가)를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2단계 평가 : 평가위원회는 1단계 중간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면 혹은 대면)을 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6-2. 평가기준

- 1단계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목적 부합성 (30)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15
	○ ESG형 산단 공동혁신 현안 해결 가능성 여부	15
지원 필요성 (10)	○ 정부 지원의 필요성	5
	○ 정부 지원의 시급성	5
기술개발· 실증효과성 (20)	○ 제안 기술의 혁신성 및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5
	○ 수요 연계 가능성(후속사업 기획, 규제·제도, 공급사슬 체계 등)	10
	○ 해당산업 파급효과(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	10
수행능력 (40)	○ 컨소시엄 구성원간 공동 목표설정 및 성과에 대한 공유계획	15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제안 기술 및 실증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	10
합계		100

* [참고] K-ESG 가이드라인 기본 진단항목 체계를 활용하여 사업추진방향 제시

○ 2단계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목적 부합성(10)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50)	○ 기술개발 및 실증 주제의 혁신성	15
	○ 기술개발 및 실증 기획의 구체성	10
	○ 과제 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10
	○ 성과목표의 타당성(성과지표 적절성, 목표 산출근거 등)	5
	○ 추진일정의 구체성	5
	○ 기존과제(사업)과의 차별성 등	5
파급효과 (15)	○ 기술개발 및 실증 성과의 우수성·활용방안	5
	○ 수요 연계 가능성(후속사업 기획, 규제·제도, 공급사슬 체계 등)	5
	○ 해당산업의 산단내 파급효과(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	5
연구역량 (15)	○ 주관기관, 참여기관 구성 및 역할, 협조체계	10
	○ 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기자재 및 시설 보유여부	5
예산계획 (10)	○ 세부항목별 예산 배분	10
	○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비율	
합 계		100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최고득점 과제를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
- 선정된 과제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7. 근거법령 및 규정

7-1.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7-2.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사업신청

- (접수기간) 2022. 1. 28(금) ~ 2022. 2. 28.(월) 18시
- (접 수 처) 전산등록(KICOX 사업관리시스템, www.kicox.or.kr/cluster)
 - 연구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가 원칙
-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산업부 및 산단공 홈페이지)
- (문 의 처) 신청기관이 소재한 산업단지 및 집적지를 관할하거나 가장 인접한 한국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본사
 - 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성과팀(070-8895-7223)
 - 시스템 오류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성과팀(070-8895-7208)

지역	주 소	연락처(070-8895-****)
인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7(고잔동)	7454
경기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7517
경북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7	7782
대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10층	7781
광주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13 하이테크센터 5층	7913
전남	전남 여수시 삼동3길 13 여수혁신지원센터 6층	7994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외동) 5층	7818
전북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오식도동) 종합지원센터	7965
부산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5 2층	7843
울산	울산 남구 정동로 83(삼산동) 5층	7886
본사	대구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7256

9.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과제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이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NO	신청시 제출서류	부수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2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해당 시)	각 1부
3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4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확인서류(기업에 한함) ① 입주계약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기관의 입주확인서류(공문) ②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류	각 1부
5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6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최근 2개 연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각 1부
7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에 한함)	각 1부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양식 1

1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양식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용 [] 협약용		보안등급 ¹⁾ 일반[] 보안[]	
중앙행정기관명 ²⁾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세부사업명 ⁴⁾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	
전문기관명 ³⁾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역사업명 ⁵⁾	공동혁신 구축	
공고번호 ⁶⁾		산업통상자원부 제20xx-xx호		연구개발 과제번호 ⁷⁾			
선정방식 ⁸⁾		정책지정[] 지정공모[] 품목공모[] 분야공모[√] 자유공모[]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대상분야 ⁹⁾		공고문 0p. 지원 분야 참고하여 5개 분야 중 선택(연구개발계획은 복합하여 수립 가능)					
기술분류	산업기술분류 ¹⁰⁾ (6자리 코드)	1순위 소분류 명칭 ()	00%	2순위 소분류 명칭 ()	00%	3순위 소분류 명칭 ()	0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¹¹⁾ (6자리 코드)	1순위 소분류 명칭 ()	00%	2순위 소분류 명칭 ()	00%	3순위 소분류 명칭 ()	00%
연구개발과제명 ¹²⁾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기관유형 ¹⁷⁾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¹³⁾		사전기획단계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연구개발단계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연구개발비 ¹⁴⁾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¹⁴⁻¹⁾	기관부담연구개발비 ¹⁴⁻²⁾		그 외 기관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등		총 연구개발비	
		구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사전기획 총액	39,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공동연구개발기관 ¹⁵⁾							역할 수요
							공동
연구개발과제 실무책임자 ¹⁷⁾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인)¹⁸⁻¹⁾
(직인)¹⁸⁻²⁾

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삭제 후 제출합니다.)
작성 후 CMS(<https://www.kicox.or.kr/cluster>)에 등록합니다.

- 보안등급: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중앙행정기관명: 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 전문기관명: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세부사업명: 해당 과제의 세부사업명을 기재합니다.
- 내역사업명: 해당 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 공고번호: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 과제번호: 과제 신청 시 사업관리시스템(CMS)에서 부여되는 번호 8자리를 기재합니다.
-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 표시).
- 지원대상분야: 공고문 p.4 1-4 지원분야에 따른 지원대상분야를 기재합니다.
- 산업기술분류: 과제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명과 비중을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예) : 1순위 내열소재(800301) 100%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명과 비중을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예) : 1순위 항공안전기술(EI0701) 80% 2순위 인적안전기술(EI0803) 20%
-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기간: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전체: 과제 수행 전체기간으로서 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 다년도 과제의 경우 각 연차의 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비: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 기관유형
 -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부터 12)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과제 실무책임자: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실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날인
 - 연구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연구개발기관명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영리기관) 혹은 직인(비영리기관) 날인(예: ㈜산단공 대표이사 이OO)

목 차

1. 사전기획과제의 필요성	
1-1. 정부 지원의 필요성	(페이지 표기)
1-2. 정부 지원의 시급성	(페이지 표기)
2. 사전기획 및 기술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	
2-1. (1단계) 사전기획 목표 및 내용	(페이지 표기)
2-2. (2단계)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페이지 표기)
2-3. 사업추진방향	(페이지 표기)
2-4.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분야와의 연계성, 융합 가능성	(페이지 표기)
3.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ESG 전략수립의 범위 및 내용	(페이지 표기)
3-2.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페이지 표기)
3-3. 개발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페이지 표기)
3-4. 컨소시엄 추진체계 및 역할	(페이지 표기)
4.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성과 활용방안	(페이지 표기)
4-2. 기대효과	(페이지 표기)
5. 연구개발기관 현황	
5-1. 연구책임자 등 현황	(페이지 표기)
5-2.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페이지 표기)
6.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6-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페이지 표기)
6-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페이지 표기)
6-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	(페이지 표기)
7. 연구개발기관 현황	
7-1.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페이지 표기)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용 [] 협약용		기술료	
				정수[]	비정수[√]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세부사업명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
전문기관명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역사업명	공동혁신 구축	
연구개발과제명(과제번호)		()			

※ 주석으로 된 파란글씨 및 작성요령 표는 삭제 후 제출
 ※ 본문내용은 돋움체 12pt, 표는 돋움 8pt로 작성

1. 사전기획과제의 필요성

1-1. 정부 지원의 필요성

(1) 국내·외 기술 및 연구동향

0
-
.

(2) 정부 지원의 필요성

0
-
.

1-2. 정부 지원의 시급성

0
-
.

0
-
.

2. 사전기획 및 기술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2-1. (1단계) 사전기획 목표 및 내용 ※ 사전기획 과제 중심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1) 사전기획 목표 및 내용

0

-

.

(2) 사전기획 주요 성과지표 및 달성계획

0

-

.

(3) 사전기획과제 수행일정

일련 번호	개발 내용	추진 일정(사전기획단계)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ESG 전략수립			

2-2. (2단계)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 전체 기술개발 과제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1)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0

-

.

(2) 기술개발 주요 성과지표 및 달성계획

0

-

.

(3) 기술개발과제 수행일정

일련 번호	개발 내용	추진 일정(연구개발단계)	
		1차 연도	2차 연도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2-3. 사업추진 방향 ※ ESG 각 범주별 현안을 진단하고, 공동혁신 해결을 위한 추진방향 작성([참고] K-ESG 가이드라인 V1.0)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사업추진 방향
환경(E)	예시 : 환경경영목표	예시 : E-1-1	예시 : 환경경영 목표 수립	
:				
(추가작성 가능)				
사회(S)	예시 : 목표	예시 : S-1-1	예시 : 목표 수립 및 공시	
:				
(추가작성 가능)				
지배구조(G)	예시 : 이사회 구성	예시 : G-1-1	예시 :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				
(추가작성 가능)				

2-4.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분야와의 연계성, 융합 가능성

0

-

.

0

-

.

3. 추진전략 · 방법 및 추진체계

3-1. ESG 전략수립의 범위 및 내용

0
-
.

3-2.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0
-
.

3-3. 개발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0
-
.

3-4. 컨소시엄 추진체계 및 역할

0
-
.

4.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성과 활용방안 ※ 수요연계 가능성 등 기재

0
-
.

4-2. 기대효과 ※ 과학·기술적 측면, 경제·사회적 측면, ESG적 측면 등의 기대효과 기재

0
-

5. 연구개발기관 현황

5-1. 연구책임자 등 현황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 기관별로 양식 추가하여 별도작성

-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학력 ※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 주요 연구개발 실적 ※ 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 중/ 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 최근 5년간 5개 이내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 최근 5년간 5개 이내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 최근 5년간 실적 기재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 ※ 최근 5년간 실적 기재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 ¹⁾	사업화 형태 ²⁾	지역 ³⁾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 그 밖의 수상경력 등 대표적 실적 ※ 최근 5년간 5개 이내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연도				사전기획		연구개발	
												1년	2년	

- 연구지원인력 현황 ※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연도				사전기획	연구개발		
												1년	2년	

○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 또는 연구 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

- 기관명①: (역할:) ※ 기관별로 양식 추가하여 별도로 작성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직위			전자우편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5-2.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 해당 시 작성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6.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사전기획에 한하여 인건비, 연구활동비만 산정 가능

※ 실증과제 연계 시 동 사업 공고 7. 근거법령 및 규정에 따름

6-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현금	현물	소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물	합계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 ¹⁾)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정부지원금(39,000천원 내외) 모두 계상 가능

6-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⁵⁾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¹⁾	특례 ²⁾	일반 ³⁾	특례 ⁴⁾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 ※ 해당 시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 2단계 선정·지원시 구축계획으로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경우 필수 작성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 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 ¹⁾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기관 현황

7-1.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 가능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구분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용)

세부사업명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	연구개발과제번호	
내역사업명(해당 시 작성)	공동혁신 구축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가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료 납부의무기관의 경우 개발완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나머지 각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대표하여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 ※ 법인기관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 ※ 연구개발기관 모두가 제출해야하며, 연구개발기관 별 날장 제출도 가능함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세부사업명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번호	
내역사업명(해당 시 작성)	공동혁신 구축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
구개발과제 선정에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
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
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
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주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이용 동의 여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주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참여연구자 정보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²⁾	국가연구자 번호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3책/5공) ³⁾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자필서명)
○○○ ¹⁾					90% (2/5)	

□ 연구근접지원인력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²⁾	국가연구자 번호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³⁾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자필서명)
○○○ ¹⁾					100%	

연구개발기관 동의란

연구개발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년 월 일

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 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기재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기재
- 2)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 3) 전체 인건비계상률에는 연구개발과제가 선정 될 경우, 연구개발시작일 기준으로 본 과제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계상률과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를 3책5공으로 표기(연구근접지원인력은 해당사항 없음)하여 기재하여야 함
 - (예시) 연구개발시작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수는 5개 수행중이며 5개 과제에서 주관 연구개발연구책임자를 2개를 맡을 경우 2/5로 기재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세부사업명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번호	
내역사업명(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고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